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청 구 인 1. 권 0 0

청 구 인 2. 김 0 0

청 구 인 3. 허 0 0

위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김 가연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50길 62-9, 402호 (사)오픈넷

전화 : 02) 525 - 2082, 팩스 : 02) 581 - 1642

청 구 취 지

“전기통신사업법(2014. 10. 15. 법률 제12761호로 개정된 것) 제32조의7 및 동 법 시행령 제37조의8(2015. 4. 14. 대통령령 제26191호로 개정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침해된 권리

헌법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제21조 알 권리, 교육권

침해의 원인

전기통신사업법(2014. 10. 15. 법률 제12761호로 개정된 것) 제32조의7, 동법 시행령(2015. 4. 14. 대통령령 제26191호로 개정된 것) 제37조의8

청구이유

I. 청구인들의 지위

청구인들은 이동통신사와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스마트폰을 구입해 사용하고 있거나 계약을 체결할 예정인 청소년과 그 법정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차단수단 설치의무 조항에 의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알 권리, 교육권을 침해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II. 헌법소원심판의 요건

1.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청소년과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차단수단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2014. 10. 15. 법률 제12761호로 개정된 것) 제32조의7과 동법 시행령(2015. 4. 14. 대통령령 제26191호로 개정된 것) 제37조의8(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차단수단 설치의무 조항’이라 하고, 시행령 조항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합니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입니다.

가.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7

제32조의7(청소년유해매체물 등의 차단) ①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과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음란정보에 대한 차단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차단수단의 제공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차단수단 제공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8

제37조의8(청소년유해매체물등의 차단수단 제공 방법 및 절차) ① 법 제32조의7제1항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과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해당 청소년이 전기통신서비스를 통하여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불법음란정보(이하 "청소년유해매체물등"이라 한다)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해당 청소년의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청소년유해매체물등을 차단하는 소프트웨어 등의 차단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차단수단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계약 체결 시

가. 청소년 및 법정대리인에 대한 차단수단의 종류와 내용 등의 고지
나. 차단수단의 설치 여부 확인

2. 계약 체결 후: 차단수단이 삭제되거나 차단수단이 15일 이상 작동하지 아니할 경우 매월 법정대리인에 대한 그 사실의 통지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요건

가. 자기관련성

청구인들은 이 사건 차단수단 설치의무 조항의 적용을 받아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으므로 자기관련성이 인정됩니다. “법률에 의한 기본권침해가 문제되는 경우에 청구인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법의 목적 및 실질적인 규율대상, 법규정에서의 제한이나 금지가 제3자에게 미치는 효과나 진지성의 정도, 규범의 직접적인 수규자에 의한 헌법소원의 제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현재 2000. 6. 29. 99헌마289; 현재 2003. 5. 15. 2001헌마565).

물론 이 사건 차단수단 설치의무 조항은 설치의무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부과하고 있지만, 차단수단의 설치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받는 자들은 청구인들입니다. 즉, 이 사건 차단수단 설치의무 조항의 목적은 스마트폰 등을 통하여 유통되는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음란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함이며, 이러한 목적을 위해 동 규제의 법적 구조는 법 규정 - 전기통신사업자 - 청소년과 법정대리인의 삼각 구도로 짜여 있어, 설치의무의 이행은 전기통신사업자가 하지만, 청소년과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인 청구인들이 실질적인 규율대상인 것입니다. 또한 규범의 직접적 수규자인 전기통신사업자가 청구인들의 기본권 침해 문제를 다투기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나. 현재성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는 기본권을 침해받은 때로부터 기산해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청소년이 이동통신사와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때 비로소 구체적으로 기본권의 침해가 생긴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헌법재판소에서는 구체적인 기본권의 침해가 있기 전이라도 현재

그 침해가 예측된다면 기본권 구제의 실효성을 위하여 현재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해왔습니다(현재 1995. 2. 23. 91헌마204; 현재 1996. 8. 29. 95헌마108; 현재 2004. 12. 16. 2002헌마333 등).

다. 직접성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법률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여야 합니다. 그러나 구체적 집행행위가 존재하는 경우라고 하여 언제나 반드시 법률자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예외적으로 집행행위가 존재하는 경우라도 그 집행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구제절차가 없거나 구제절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권리구제의 기대가능성이 없고, 다만 기본권침해를 당한 청구인에게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경우 등으로서 당해 법률에 대한 전제관련성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법률을 헌법소원의 직접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현재 1992. 4. 14. 90헌마82; 현재 1997. 8. 21. 96헌마48 등).

이 사건 차단수단 설치의무 조항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차단수단을 무조건 설치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청소년 및 법정대리인에게 차단수단 설치를 거부할 수 있는 선택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전기통신사업자의 차단수단 설치행위는 위 조항에 의해 직접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어떠한 집행행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이 사건 차단수단 설치의무 조항에 의해 직접적으로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습니다.

라. 보충성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후단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률조항의 위헌여부를 다투는 이 사건 심판청구에 있어서 일반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 청구기간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은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하여 청구기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당한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시점을 기준으로, 법령이 시행된 후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현재 2002. 1. 31. 2000헌마274). 청구인 1은 2016. 8. 10.에 전기통신서비스 제공 계약을 체결하여 이때 비로소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 침해를 받게 되었으며 이 날로부터 청구기간을 기산해야 합니다. 청구인 2, 3은 아직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위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현재성이 인정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장래 확실히 기본권침해가 예측되어 현재성을 인정하는 이상 청구기간 도파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없습니다.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는 이미 기본권침

해가 발생한 경우에 비로소 문제될 수 있는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아직 기본권침해는 없으나 장래 확실히 기본권침해가 예측되므로 미리 앞당겨 현재의 법적 관련성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현재 1999. 12. 23. 98 헌마363; 2006. 4. 27. 2005헌마997).

결론적으로 청구인들은 모두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였습니다.

바. 소 결

위와 같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 직접성, 현재성, 보충성, 청구기간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적법합니다.

III. 이 사건 심판대상의 위헌성

1. 이 사건 차단수단 설치의무 조항의 연혁 및 내용

가. 이 사건 차단수단 설치의무 조항의 연혁

「청소년 보호법」은 영화 및 비디오물, 게임물, 음악영상물 및 음악영상 파일 등 각종 매체물 중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매체물을 고시하고,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된 것에는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고 청소년에게 이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여

서는 안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합니다)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차단수단 설치의무 조항은 스마트폰 등을 통하여 유통되는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음란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청소년에게 스마트폰 판매 시 유해정보 차단수단을 설치할 것을 의무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4. 10. 15. 「전기통신사업법」이 일부개정되면서 도입되었습니다. 이후 차단수단 제공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2015. 4. 14. 신설되었으며,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및 시행령은 2015. 4. 16.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나. 차단수단 설치의무의 내용

이 사건 차단수단 설치의무 조항에 의하면 청소년과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이통사'라 합니다)는 해당 청소년의 이동통신 단말장치(이하 '스마트폰'이라 합니다)에 청소년유해매체물 등을 차단하는 소프트웨어 등의 차단수단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먼저 이통사는 계약체결 시 청소년과 법정대리인에게 차단수단의 종류와 내용 등을 고지하고 스마트폰에 차단수단을 설치해야 하며, 이후 설치된 차단수단이 삭제되거나 15일 이상 작동하지 아니할 경우 법정대리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를 해야 합니다.

법상 강제되는 차단수단은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앱)을 의미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설립한 방송통신이용자보호센터의 "와이즈유저" 방송

통신이용자 정보포털(www.wiseuser.go.kr)의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 애플리케이션(앱) 현황을 살펴보면, 2016. 2. 26. 최종 업데이트일 기준 현재 총 19개의 앱이 유통되고 있습니다(첨부서류 1. 방송통신이용자 정보포털 캡쳐화면 참조). 이통사는 이러한 앱 현황을 청소년과 법정대리인에게 알려주고 이 중 하나를 선택해 설치해야 합니다.

2. 이 사건 차단수단 설치의무 조항에 의하여 제한되는 기본권

이 사건 차단수단 설치의무 조항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청소년의 스마트폰에 차단수단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청소년이 어떤 정보를 검색하고 접근하는지를 상시 감시하게 하여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청소년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하며, 청소년과 법정대리인의 개인정보를 수집, 보관, 이용하기 때문에 개인정보자기결정권도 제한합니다. 또한 차단수단의 불완전성으로 인해 유해정보뿐만 아니라 합법적이고 교육적인 정보도 차단되어 알 권리 를 제한하며, 차단수단 설치 여부에 대해 청소년 및 법정대리인의 선택권 을 인정하지 않아 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제한합니다.

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사생활의 비밀은 국가가 사생활영역을 들여다보는 것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는 기본권이며, 사생활의 자유는 국가가 사생활의 자유

로운 형성을 방해하거나 금지하는 것에 대한 보호를 의미합니다. “요컨대 헌법 제17조가 보호하고자 하는 기본권은 사생활영역의 자유로운 형성과 비밀유지”(현재 2003. 10. 30. 2002헌마518; 현재 2007. 5. 31. 2005헌마 1139 등)라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기본권 주체인 청소년에게도 당연히 인정됩니다.

또한 국제인권법상으로도 프라이버시권은 중요한 인권으로서 보호받고 있습니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7조는 “어느 누구도 그의 사생활...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고 하여 프라이버시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6조는 “어떠한 아동도 사생활...에 대하여 독단적이거나 불법적인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고 하여 프라이버시권이 만 18세 미만의 아동에게도 인정됨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차단수단 설치의무 조항에 의하면 이통사는 청소년의 의사와 상관없이 차단수단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차단수단의 삭제 또는 비활성화 여부를 확인해서 법정대리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통사는 차단수단을 통해 청소년이 스마트폰으로 어떤 정보를 검색하고 접근하는지를 확인할 뿐만 아니라 차단수단의 작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청소년의 스마트폰을 상시 감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동 법의 모태가 된 한선교의원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에서 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차단수단의 작동여부 주기적 확인의무는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우려”가 있고, “사업자가 이용자의 단말기 이용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이용자의 사생활 침해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첨부서류 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참조).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현황에 대한 위와 같은 상시 감시는 명백하게 청

소년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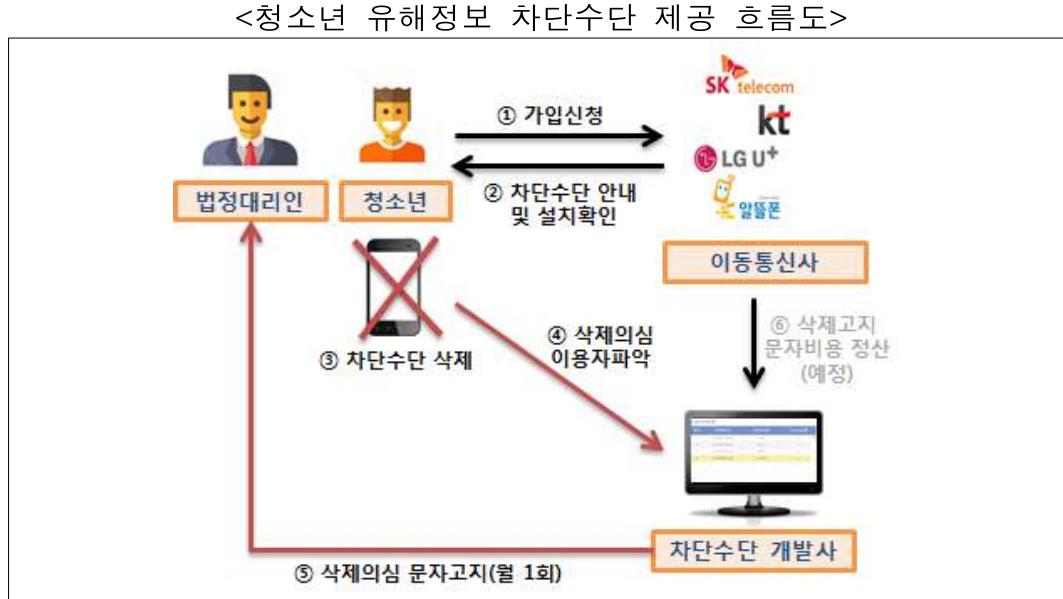
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로서,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수집·보관·처리·이용 등의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현재 2005. 5. 26. 99헌마513)합니다.

이 사건 차단수단 설치의무 조항은 이통사가 청소년과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청소년과 법정대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보관하고, 청소년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접속정보, 위치정보, IP 주소, 로그기록 등 스마트폰 사용정보를 수집·보관하며, 이렇게 얻어진 개인정보를 사업자가 활용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MOIBA)는 ‘사이버안심존’과 ‘스마트 안심드림’이라는 차단 앱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러한 앱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청소년의 주 이용정보, 이용시간량, 유해정보 이용현황, 과몰입 현황 등에 대한 통계인 ‘스마트폰 이용행태 통계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규제영향분석서(첨부서류 3.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신설·강화규제 심사안 참조)에 의하면, 계약체결 시 이통사가 차단수단 안내 및 설치확인을 하고, 이후 차단수단 개발사가 차단수단 삭제 여부를 파악해서 법정대리인에게 문자로 고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통사뿐만 아니라 차단수단

개발사도 청소년과 법정대리인의 개인정보를 수집·보관·활용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 차단수단 설치의무 조항은 청소년과 법정대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합니다.

다. 알 권리에 대한 제한

정보에의 접근·수집·처리의 자유, 즉 "알 권리"는 표현의 자유와 표리일체의 관계에 있으며, 표현의 자유에 당연히 포함되는 기본권입니다(헌재 1991. 5. 13. 90헌마133). 또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제19조 제2항에서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3조 제1항은 아동의 알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차단수단 설치의무 조항에 의해 강제되는 차단수단은 청소년유해매체물과 음란정보를 차단하는 소프트웨어이며, 데이터베이스에 기반을

둔 필터링 기술의 적용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필터링 기술의 바탕이 되는 데이터베이스의 구성 과정에서 광범위하게 행정검열을 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음란정보 규제의 문제점으로 인해 유해정보가 아닌 합법적이고 교육적인 정보도 차단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는 청소년의 알 권리를 제한합니다.

라. 교육권에 대한 제한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은 비록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아니하지만,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제36조 제1항,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 및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7조 제1항에서 나오는 중요한 기본권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교육에 관하여 전반적인 계획을 세우고 자신의 인생관·사회관·교육관에 따라 자녀의 교육을 자유롭게 형성할 권리를 가지며, 부모의 교육권은 다른 교육의 주체와의 관계에서 원칙적인 우위를 가집니다(현재 2000. 4. 27. 98헌가16). 「유엔아동 권리협약」 제5조에서도 “당사국은 부모... 기타 아동에 대한 법적 책임자들이 아동의 능력발달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적절한 감독과 지도를 행할 책임과 권리 및 의무를 가지고 있음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국가에 대한 부모의 자녀 교육권의 일차적 우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차단수단 설치의무 조항은 이통사에게 차단수단 설치의무를 부과할 뿐, 법정대리인에게 차단수단 설치에 대한 선택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부모의 교육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자녀의 교육에 대해 원칙적 우위를 가지고 있는 부모의 교육권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부모들이 차단수단 설치에 동의할 것이라 일방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니다. 이러한 국가적 개입은 부모의 자녀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교육의 기회를 빼앗을 뿐만 아니라 충분한 논의와 이해 없이 일방적으로 강요된 감시로 인해 청소년의 반발심과 일탈을 불러일으켜 가족생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이 사건 차단수단 설치의무 조항의 기본권 침해

이 사건 차단수단 설치의무 조항은 청구인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알 권리, 그리고 교육권을 제한하는 바, 헌법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준수할 것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차단수단 설치의무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위헌입니다.

가. 입법목적의 정당성

이 사건 차단수단 설치의무 조항은 스마트폰 등을 통하여 유통되는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음란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 자체는 정당하다고 하겠습니다.

나. 수단의 적합성

(1) 수단의 적합성 상실

이 사건 차단수단 설치의무 조항은 위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통사

에 청소년과 법정대리인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차단 앱을 강제 설치한 뒤 삭제하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국가후견주의적인 정책으로 자녀에 대한 부모의 교육권을 경시하고, 사업자를 이용하여 청소년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정책수단으로서의 적합성과 합리성을 상실한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는 마치 강제적 셧다운처럼, 그보다 더 침해적으로, “청소년 보호라는 명분에 치우쳐” 국가가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까지 쟁기고 간섭하는 것을 허용하는 “전근대적이고 국가주의적일 뿐만 아니라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에 기대고 있는 것”입니다(현재 2014. 4. 24. 2011헌마659 등).

또한 법에서는 유해정보 ‘차단수단’만을 강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차단 앱 중 다수는 유해정보 차단을 넘어 스마트폰 사용 모니터링, 위치 조회 등 청소년의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기능들을 갖추고 있습니다([첨부서류 4. 2014. 2. 21.자 블로터 기사](#) 참조). 이렇게 감시 내지 모니터링 기능을 갖춘 앱은 보안이 취약한 경우가 많아 해커들의 표적이 되며, 청소년을 개인정보 유출, 해킹 등의 보안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감시 소프트웨어를 통신기기에 강제로 설치하도록 하는 법은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감시 앱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술적 측면에서도 차단수단 설치의무는 청소년 보호에 적합한 수단이 아닙니다.

(2) ‘스마트보안관’ 사례

‘스마트보안관’ 사례는 감시 앱 강제설치가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적합한 수단이 될 수 없음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현재 아이폰용만 제공되고 있는 ‘스마트보안관’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예산을 지원해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MOIBA)에서 개발, 2012년부터 보급해오고 있었던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입니다. 무료일 뿐만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가 권장하는 앱으로 차단수단 강제 설치가 시작된 2015. 4. 16. 이후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앱이었습니다.

그런데 2015. 9. 20. 캐나다 토론토대학교 산하 시티즌랩(Citizen Lab) 연구소는 “우리의 아이들은 안전한가? 청소년들을 디지털 위협에 노출시키는 한국의 스마트보안관 앱”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첨부서류 5. [시티즌랩 보도자료 1차](#) 참조). 스마트보안관의 보안성에 대한 감사 결과를 담은 동 보고서에 의하면 스마트보안관을 사용하는 청소년과 부모의 프라이버시와 보안을 위협하는 26건의 취약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취약점들은 스마트보안관 계정 무력화, 데이터 변조, 개인정보 절도 등 해킹에 악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보안관이 「개인정보 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상 요구되는 안전조치를 다하지 못했다는 반증이며, 심지어 스마트보안관 개인정보취급방침에도 위배되는 것이었습니다. 2015년 7 월말 기준으로 약 39만 명의 청소년이 스마트보안관의 보안 위협에 노출되어 있었으며, 이 문제는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되었습니다(첨부서류 6. [2015. 10. 4.자 뉴스1 기사](#) 참조).

보고서 발표 직후 방송통신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취약점을 수정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졌으며 “앞으로도 필요시 보안취약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대응한 바 있습니다(첨부서류 7. [스마트보안관앱 보안 취약점 설명자료](#) 참조). 그러나 2015. 11. 1. 시티즌랩은 스마트보안관에 대해 2차 감사 결과를 발표했고, 1차 보고서에서 지적했던 문제들의 다수가 해결되지 않고 남아있음을 지적했습니다(첨부서류 8. [시티즌랩 보도자료 2차](#) 참조).

같은 시기, MOIBA는 스마트보안관 서비스를 중단하고 신규회원을 받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스마트보안관을 대체하여 MOIBA가

제공하고 있는 안드로이드용 ‘사이버안심존’은 이름만 변경되었을 뿐 스마트보안관과 거의 동일하며 유사한 보안 문제를 가지고 있고, 또한 아이폰용 스마트보안관은 그대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스마트보안관 문제는 현재진행형입니다.

(3) 소결

이와 같이 차단 앱 설치 강제라는 수단은 청소년을 유해정보로부터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을 국가가 통제할 수 있다는 전근대적이고 국가주의적일 뿐만 아니라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며, 청소년을 보호하기는 커녕 오히려 청소년을 보안위험에 노출시키고 있으므로 적합한 수단이라 할 수 없습니다.

다. 침해의 최소성

(1) 침해최소성 원칙 위배

이 사건 차단수단 설치의무 조항은 이통사는 차단수단에 대해 안내하고 설치 여부는 청소년과 부모의 선택에 맡기도록 하는 임의적 규정으로도 입법목적을 실현하기에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및 부모의 동의 없이 이통사가 차단수단을 강제 설치하게 하고 차단수단을 삭제하지 못하도록 감시하게 하는 필요적 규정을 두어 침해최소성 원칙에 위배됩니다. 또한 이미 청소년을 유해정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필터링만 하는 소프트웨어 등 덜 침해적인 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권 침해가 큰 수단을 강제하고 있기 때문에 침해최소성 원칙에 위배됩니다.

(2) 차단수단 설치 및 감시의 필요적 규정

유해정보로부터의 아동 및 청소년 보호의 필요성은 의심할 여지가 없으며, 국제 사회에서도 바람직한 보호 정책에 대한 수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차단수단 설치의무 조항처럼 국가가 이동통신기기에 감시 앱 설치를 강제하는 입법례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습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러한 소프트웨어의 안전성이 제대로 검증된 바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국, 영국, 독일 등 해외 선진국에서는 청소년 보호와 관련해 아동포르노와 같이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간 주도의 자율규제에 맡기고 정부는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차단수단 설치의무 조항과 그나마 가장 유사한 입법례로는 일본의 「청소년이 안전하게 안심하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동법은 휴대전화 인터넷 접속서비스 제공자(ISP)에게 청소년 유해정보 필터링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지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선택권을 인정하며, 사업자에게 삭제 여부를 감시하도록 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또한 동 법의 목적 자체가 청소년이 인터넷을 적절히 활용하는 능력(인터넷 리터러시) 습득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유해정보를 열람할 기회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필터링)를 강구하여 궁극적으로 청소년의 권리옹호에 이바지하고자 함이며, 전반적으로 인터넷의 특성을 배려하여 민간에 의한 자율적 대응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철학이 반복적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고려 없이 국가가 사업자에게 청소년 감시 의무를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이 사건 차단수단 설치의무 조항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할 것입니다.

또한 이 사건 차단수단 설치의무 조항은 청소년 및 법정대리인이 차단 앱 자체에 보안 문제나 스마트폰 구동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거나 혹은

프라이버시 침해를 우려해 차단 앱 설치를 거부하거나 추후 삭제를 원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동의를 받더라도 차단수단 삭제가 불가능해져 이에 불만을 가진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을 루팅하거나 탈옥하는 등으로 우회수단을 찾아내는 과정에서 더 심각한 보안위협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듯이 설치 시에는 청소년 및 부모의 선택권을 인정하지 않고, 설치 이후에는 차단수단의 삭제를 허용하지 않고 사업자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감시를 하게 하는 수단은 침해최소성의 원칙에 반합니다.

(3) 덜 침해적인 수단의 존재

우리나라의 청소년 보호 규제는 국가후견주의적, 정부 주도적 성격이 강한 것이 특징이며, 이미 인터넷상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차단·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세계의 그 어느 나라보다도 많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청소년유해표시·포장 의무, 판매·대여·배포 내지 시청·관람·이용 목적 제공 금지 등의 제도와 나이 및 본인확인제, 정보통신망법상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전자적 표시 의무,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광고금지,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제도 등과 불법정보의 유통 금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게임물 등급제 및 셧다운제 등이 그것입니다. 이러한 제도들 위에 차단수단 설치의무를 더하는 것은 중복 규제로서 사업자 등 이해관계자들에게는 과도한 부담이며 실효성도 매우 떨어집니다.

또한 청소년의 스마트폰에 필터링뿐만 아니라 삭제 여부까지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감시 앱을 설치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청소년의 사생활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입니다. 이러한 침해 없이 유해정보만을 필터링하는 소프트웨어라는 덜 침해적인 수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온라인상 유통되는 청소년유해정보의 경우, 이미 전자적 표시의무 등 필터링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 적용되어 있고 이러한 정보를 접근하기 위해서는 본인확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때 사용되는 필터링 기술은 차단수단으로 강제되는 앱들이 사용하는 것과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동일한 규제가 중복 적용되고 있습니다. 즉 청소년유해정보 필터링은 이미 네트워크상에서 구현되고 있으므로 굳이 추가 소프트웨어의 설치를 강제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4) 청소년 보호법상 본인확인제와의 비교

헌법재판소는 청소년 보호법 제1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결정(현재 2015. 3. 26. 2013헌마354)에서 청소년 보호법상 본인확인 조항은 청소년유해매체물 제공자에게 이용자의 연령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본인확인을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 이외에 직접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고, 이용 과정에서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으므로 동 제도는 침해의 최소성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이 사건 차단수단 설치의무 조항은 이통사 및 차단수단 개발사가 청소년과 법정대리인의 개인정보를 수집·보관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면서도, 이러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를 전혀 마련해두고 있지 않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상 본인확인제와 비교해보더라도 이 사건 차단수단 설치의무 조항은 명백히 침해최소성 원칙에 위배됩니다.

(5) 소결

이와 같이 이 사건 차단수단 설치의무 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에도 반합니다.

라. 법의의 균형성

(1) 비례성 원칙 위반

이 사건 차단수단 설치의무 조항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유해정보로부터의 청소년 보호라는 공익은 청구인들이 강제적으로 차단수단을 사용해야 함으로써 받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알 권리 및 교육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정당화하기에 부족하므로 비례성 원칙에도 위배됩니다.

(2)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와 청소년 보호

국가가 유해정보 차단을 위해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을 일괄적으로 감시하는 정책은 매우 전제주의적이며, 인간의 존엄성 내지 인격의 근본적인 구성을 요소인 사생활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정책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청소년 스마트폰 보급률이 매우 높은 점을 감안할 때 대한민국에서 만 19세 미만의 사람은 거의 모두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감시를 감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시에 길들여진 세대의 미래는 마치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의 디스토피아와 흡사하지 않을까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첨부서류 9. [2015. 6. 16.자 BBC News 기사](#) 참조). 유해정보로부터의 청소년 보호라는 공익만으로는 이러한 침해를 절대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3)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청소년 보호

개인정보의 종류 및 성격, 수집목적, 이용형태, 정보처리방식 등에 따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제한이 인격권 또는 사생활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이나 침해의 정도가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종교적 신조, 육체적·정신적 결함, 성생활에 대한 정보와 같이 인간의 존엄성이나 인격의 내적 핵심, 내밀한 사적 영역에 근접하는 민감한 개인정보들에 대하여는 그 제한의 허용성은 엄격히 검증되어야 할 것입니다(현재 2005. 7. 21. 2003헌마282).

청소년과 법정대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가족관계 등은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이며, 청소년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접속정보, 위치정보, IP 주소, 로그기록 등 스마트폰 사용정보 또한 사적 영역 내의 민감한 개인정보입니다.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이통사와 차단수단 개발사 등 사업자가 이렇게 민감한 개인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보관하고 별도의 보호조치 없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명백하게 비례성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4) 알 권리와 청소년 보호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확인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매체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제도의 특징은 국가후견주의적인 행정규제 중심이라는 점입니다. 동 제도는 크게 사전규제와 사후규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사전규제로는 등급분류 제도가 있는데 담당 심의기관으로는 영화 및 비디오물에 대해서는 영상물등급위원회, 게임물에 대해서는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있습니다. 사후규제를 담당하는 심의기관은 음반에 대해서는 청소년보호위원회, 방송프로그램 및 인터넷 콘텐츠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소설, 만화 등 도서류 및 간행물에 대해서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행

정기관이 광범위하게 표현물을 심의하여 규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율규제의 일환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SafeNet’이라는 인터넷내용 등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보제공자가 스스로 정보 내용을 일정한 등급 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이용가능한 등급 정보를 표시하면, 정보이용자 및 청소년 보호자가 해당 정보 내용을 필터링 또는 차단 소프트웨어를 적용해 차단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게다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규제하는 음란정보의 경우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도 접근할 수 없는 불법정보로서 원칙적으로는 굳이 별도의 차단수단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청소년의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우리나라의 정부 주도 청소년 보호 정책이 규제 일변도여서 합법적이고 교육적인 정보도 과잉 차단하고 있으며, 또한 급변하는 인터넷 시장에서 큰 효율성을 갖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이 사건 차단수단 설치의무 조항은 19세 미만의 사람이라면 연령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령에 맞는 정보에 접근할 권리도 침해하고 있습니다. 유해정보로부터의 청소년 보호라는 공익보다는 청소년의 알 권리 침해로부터 오는 해악이 더 크다 할 것입니다.

(5) 교육권과 청소년 보호

헌법재판소가 “자녀의 양육과 교육은 일차적으로 부모의 천부적인 권리”이며, “부모의 교육권은 다른 교육의 주체와의 관계에서 원칙적인 우위를 가진다”고 천명했듯이(현재 2000. 4. 27. 98헌가16 등), 부모는 자신의 자녀에 대해 우선적인 교육권을 가지며, 국가의 역할은 학교교육의 영역 또는 아동학대 등 국가의 개입을 요하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모의

교육권을 보조하는 부차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 차단수단 설치의무 조항은 설치시 청소년뿐만 아니라 부모의 선택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설치 이후에는 차단수단을 삭제할 권리와 통지를 받지 않을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부모는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해 자녀를 교육할 기회를 박탈당하며, 자녀를 보안위험에 노출시키는 수단을 용인해야 합니다. 청소년 보호라는 공익만으로는 부모의 교육권에 대한 이런 중대한 침해를 허용할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마. 소결

이상과 같이 이 사건 차단수단 설치의무 조항은 입법목적은 정당하나,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비례성 원칙에 전부 반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됩니다.

4. 포괄위임금지 원칙 위반

마지막으로, 이 사건 차단수단 설치의무 조항으로부터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모법의 위임이 없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차단수단 설치의무 조항은 포괄위임금지 원칙을 위반하여 위헌입니다.

가. 포괄위임금지 원칙

우리 헌법 제75조는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

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의 위임은 구체적·개별적으로 한정된 사항에 대하여 행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각종 법령이 규제하고자 하는 대상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 할 것이지만, 적어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누구라도 당해 법률로부터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합니다(현재 1994.

6. 30. 93헌가15등; 1996. 8. 29. 94헌마113).

또한 위임의 구체성·명확성의 요구 정도는 그 규율대상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달라질 것이지만 특히 처벌법규나 조세법규와 같이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거나 침해할 소지가 있는 법규에서는 구체성·명확성의 요구가 강화되어 그 위임의 요건과 범위가 일반적인 급부행정의 경우보다 더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규정되어야 하는 반면에, 규율대상이 지극히 다양하거나 수시로 변화하는 성질의 것일 때에는 위임의 구체성·명확성의 요건이 완화되어야 합니다(현재 1994. 6. 30. 93헌가15등; 현재 1995. 10. 26. 93헌바62; 현재 1997. 2. 20. 95헌바27).

나. 법 제32조의7 제3항의 포괄위임금지 원칙 위반

이 사건 차단수단 설치의무 조항인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7은 이통사가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음란물의 차단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하여 제공의무를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 “그 제공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위임하고 있습니다.

첫째, “제공”이라 함은 “무엇을 내주거나 갖다 바침”(국립국어원)이란 의미인데, 이것만으로는 누구라도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명확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예컨대, 사업자가 차단수단의 종류와 내용 등의 고지만 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직접 차단수단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나아가 사업자가 차단수단을 개발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인지 전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둘째,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보호법상의 절차에 따라 사전적으로 무엇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인지 알 수 있으나 음란물의 경우 그러한 절차가 없는 상태에서 음란물을 “차단”하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음란물로 보일 수 있는 것을 차단하지 않으면 해당 조항을 위반하는 것인지 사후에 음란물로 법적으로 규정되는 경우에만 이를 차단하지 않는 부작위가 해당 조항을 위반되는 것인지를 불분명합니다. 이 상황에서는 사업자는 무엇이 법률을 위반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차단수단 제공의무가 단순히 탄력적 혹은 기술적 대응이 필요한 사안으로 하위 법에서 규정을 해도 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관련 법률조항 전체를 볼 때, 이 사건 차단수단 설치의무 조항은 이통사에 차단수단의 설치의무뿐만 아니라 모니터링 및 통지의무까지 지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무 위반 시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통사에 시정명령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차단수단 설치의무는 이통사의 영업수행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자 상대방인 청소년과 법정대리인의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므로, 이렇게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거나 침해할 소지가 있는 내용은 반드시 법률에서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구체적인 내용을 하위법령인 대통령령에 백지위임하고 있으므로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됩니다.

다. 법 시행령 제37조의8 제2항의 위임입법 한계 일탈

위임입법의 내용에 관한 헌법적 한계는 그 수법자가 누구냐에 따라 입법권자에 대한 한계와 수권법률에 의해 법규명령을 제정하는 수임자에 대한 한계로 구별할 수 있는데, 법률의 우위원칙에 따른 위임입법의 내용적 한계는 후자에 속합니다. 그러므로 위임명령의 내용은 수권법률이 수권한 규율대상과 목적의 범위 안에서 정해야 합니다(현재 2005. 2. 3. 2003헌마 544 등).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제2항에서 계약 체결 시에는 차단수단의 종류와 내용 등의 고지를 하고 차단수단의 “설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계약 체결 후에는 차단수단이 삭제되거나 15일 이상 “작동하지 아니할 경우” 매월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권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제공 방법 및 절차”의 규율대상과 목적의 범위를 아무리 넓게 해석한다고 할지라도, 이로부터 차단수단의 종류와 내용 등의 고지를 넘어서서, 차단수단의 ‘설치’ 의무와 차단수단 작동 ‘모니터링’ 및 법정대리인에게의 ‘통지’ 의무에 대한 근거가 된다고 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즉, 이는 모법의 위임이 없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위임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하여 위임입법의 한계를 넘었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시행령에서 특정 소프트웨어가 청소년의 개인통신기기에서 작동하는지를 타인(여기서는 부모)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것은 개인통신기기에 대한 365일 24시간 동안의 상시적 감시를 의미하는 것으로써 청소년에 대한 엄청난 프라이버시 침해를 노정하는 것입니다. 특정 소프트웨어의 구동 여부를 감시하는 것은 통신기기의 모든 작동에 대한 감시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인이 짜장면을 먹는지를 감시하는 것은 그 사람이 무언가를 먹을 때에 대한 모든 감시가 필요함은 물론 먹는 행

위 자체가 비밀리에 이루어질 가능성까지 고려한다면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한 항시적인 감시를 요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모법은 “차단수단을 제공해야 한다”고 했을 뿐 이를 제공받은 부모나 청소년 이용자가 이 차단수단을 비활성화시켜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공해야 한다”는 것은 청소년이나 부모가 자신의 의지에 따라 차단수단을 활성화할 수도 비활성화할 수도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올바른 해석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자의적으로 ‘제공된 차단수단’이 365일 24시간 활성화되어 있어야함을 가정하고 이를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법에서 어떤 행위를 해야 할 것을 의무화하면 시행령은 그 의무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데 그쳐야 하며, 모법에서 위임하지도 않은 내용인 법률상 의무의 위반을 어떻게 단속할 것인지까지 정하는 것은 명백히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입니다.

라. 소결

결론적으로, 이 사건 차단수단 설치의무 조항은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입니다.

IV. 결 론

이상과 같이 이 사건 차단수단 설치의무 조항은 청구인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알 권리, 교육권을 침해하고, 포괄위임금지 원칙을 위반하였으므로 위헌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방송통신이용자 정보포털 캡쳐화면
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3.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신설·강화규제 심사안
4. 2014. 4. 21.자 블로터 기사
5. 시티즌랩 보도자료 1차
6. 2015. 10. 4.자 뉴스1 기사
7. 스마트보안관앱 보안취약점 설명자료
8. 시티즌랩 보도자료 2차
9. 2015. 6. 21.자 BBC News 기사
10. 위임장

2016. 8. 30.

위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김 가연

헌법재판소 귀중